#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967

발의연월일: 2021. 6. 22.

발 의 자:김은혜·박성민·김태호

강기윤・정운천・지성호

조경태 · 김용판 · 성일종

구자근 • 박 진 • 송석준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에서 재건축을 위해 5층 건물을 해체하던 과정 중 건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도로를 지나가던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매몰돼 인명피해 까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함. 비단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2019년 서울 잠원동 상가 붕괴사고 등 건물 붕괴, 재난 등으로 인해 작업자나 인근을 지나가는 차량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를 감안해 지난해 5월 시행된 현행법에서는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 철거될 때까지 안전점검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건물 관리자는 건물 해체 시, 지자체에 안전계획이 포함된 해체 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자체는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함.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철거회사 직원들이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관리해야 할 해체공사

감리자들이 시공사와 관리자의 눈치를 살피는 등 현실적으로 부실한 관리가 지속돼 왔음.

이에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는 건설안전기술사 등 해체공사 안전전문가가 아니면 작성할 수 없도록 하고,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해체공사 안전전문가는 해체계획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며, 해체계획서 또는 안전관리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체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해체와 관련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ㆍ제4항 및 제50조의2 신설 등).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작성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체공사 안전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다.
- ④ 제3항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해체공사 안전전문가는 해체계획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해체계획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장에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0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해체계획서 또는 안전관리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2.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51조제1항제10호 중 "제30조제3항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함으로써"를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 안전전문가가 아닌 자에게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로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제5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 안전전문가가 아닌 자에게 해체 제외서를 작성하도록 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u>해체계획서의</u>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 작성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해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해체공사 안 체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검토를 전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받은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해체공사 안전전문가는 해체계획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 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해체계획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u>④</u>·<u>⑤</u> (생 략)

<신 설>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저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 9. (생 략)
- 10. 제30조제3항에 따라 해체계 10.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 획서를 기술자의 검토ㆍ확인 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물 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

제50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 1. 해체계획서 또는 안전관리대 책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 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 하게 한 자
- 2.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 사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실시 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 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51조(벌칙)	1	 	 

- 1. ~ 9. (현행과 같음)
- 체공사 안전전문가가 아닌 자 에게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도 록 함으로써-----

- 11. (생략)
- 12.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 사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실시 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 험을 발생하게 한 자
- ② (생략)

제54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3. (생략)
- 4.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5. (생략)
- ③ ④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2	 	 	 	 	_
	 	 	 	 	_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 체공사 안전전문가가 아닌 자 에게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도 록 한 자
- 5.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